

감사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티와이엠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승인한다.

④ 위원회는 상기 ①항 내지 ③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(이하 '위원'이라함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3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/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(종류)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·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
제10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1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
2.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관한 진술

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1.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
2.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3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4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5.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③ 감사에 관한 사항

1. 업무, 재산 조사
2. 자회사의 조사
3. 이사의 보고 수령
4.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5. 소액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
6. 감사계획 및 결과
7.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8.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9.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10.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
11.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·개정
12.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
13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14.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
제11조(관계인의 출석 등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3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